
한국지역난방공사

2021년 신입직원 채용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INK-ALL 한난!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라는 비전을 공유할 2021년 신입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우리 공사는 효율적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경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난방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추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공사 소개는 홈페이지(www.kdhc.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 및 분야

1) 일반전형 6급(을) : 46명

[단위: 명]

구 분		사무직군		기술직군							합계
		상경	전산	기계	전기	전자	토목	화공	안전	고객 기술	
전국권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¹⁾ 적용 外	3	1	7*	4	3	1	2	2	1	24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2	1	5*	3	2	1	1	2	1	18
지역전문 사원 ²⁾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	-	-	2	2	-	-	-	-	4
합 계		5	2	12	9	7	2	3	4	2	46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분야

2) 고졸인재전형³⁾ 7급 : 7명

[단위: 명]

구 분		사무직군	기술직군			합 계
		사무	기계	전기	전자	
전국권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外	1	1	1	1	4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	1	1	1	3
합 계		1	2	2	2	7

3) 사회형평전형 6급(을) : 17명

[단위: 명]

구 분	사무직군	기술직군	합 계
보 훈	2	7	9
장 애	2	2	4
경력단절여성	2	2	4
합 계	6	11	17

-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별도의 인원으로 할당하여 채용하며,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일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 (고졸)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인 자
- 임용 후 호남권역 내 광주전남지사 8년 의무 근무 (단, 4급 승진 시 타 권역으로 전보 가능)
- 고졸인재를 별도의 인원으로 할당하여 채용하며, 고졸인재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2. 채용조건

1) 채용형태 : 채용형 인턴 (기간 3개월)

-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직급으로 (6급(을), 7급) 전환

2) 근무지 : 본사 또는 전국 사업장

- ※ 단, 지역전문사원은 입사 후 호남권역 내 광주전남지사에서 8년간 의무 근무 (4급 승진 시 의무 근무 해제)

3. 지원자격

1) 전형별·직군별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첨부2 참조)
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현재 고3),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입사 후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및 해임 처리 - 졸업 가능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졸업 가능 학점의 이수가 가능한 학기를 재학 중인 자는 졸업예정자에 해당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1년 이상 법인 근무경력 보유자에 한함)
사무직군	자격요건 없음
기술직군	모집분야별 필수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첨부3 참조)

2) 공통 지원자격

- 연령 제한 없음 (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사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인재 전형은 병역미필자 응시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4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발령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전형절차

1) 입사지원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https://kdhc2021.bzpp.co.kr>)

2) 필기전형

① 직업기초능력 (50%)

구분	세 부 내 용	
구성	50문항	
분야	사무직군	6개(의사소통, 자원관리, 수리, 문제해결, 정보, 조직이해)
	기술직군	7개(의사소통, 자원관리, 수리, 문제해결, 정보, 기술, 조직이해)
수준	6급(을):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 7급: 고등학교 졸업 수준	
비고	과락기준 적용(100점 만점 기준 40점미만, 가점 적용 전 기준)	

② 직무수행능력 (50%)

구분	세 부 내 용	
구성	50문항 (사회형평전형 40문항)	
출제 분야	선택 직무별 해당과목 (첨부5 참조) - 공사 고유직무 내용을 반영한 문항 일부 포함 (첨부6 참조) - 사회형평전형은 직군별(사무, 기술) 공통문항 출제	
수준	6급(을):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 7급: 고등학교 졸업 수준	
비고	과락기준 적용(100점 만점 기준 40점미만, 가점 적용 전 기준)	

3) 면접전형

구 분	방 식	반영 비율
인성검사	자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사결과는 심층면접 참조자료로 활용 (개인별 전산장비 구비필요, 별도 안내 예정)	-
심층면접	자기소개 PT 후 발표내용,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에 기반한 질의응답	50%
직무역량 면접	업무수행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고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위원과 질의응답 (과제 답안작성은 면접장에 구비된 PC 활용)	50%

5. 전형별 합격기준

1) 입사지원

- 입사지원서 제출 시 합격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불성실 자기소개서 판정 기준

- 서로 다른 문항에 동일한 답변의 반복 (답변 유사도 70% 이상)
-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의미없는 문자 입력
- 질문과 무관한 답변
- 표절 (응시자 간 자기소개서 1개 이상 문항의 답변 유사도 70% 이상)

2) 필기전형

- 모집분야별 고득점순으로 합격 배수 인원 선발

구 분	일반, 고졸인재	사회형평
합격배수	2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3배수

*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 과락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40점 미만 (가점 적용 전 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전원합격

3)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2배수까지 선발)
- 과락기준 : 심층면접 평가위원 평균점수 또는 직무역량면접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가점 적용 전 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심층면접 고득점자 ▶ 필기시험 고득점자 ▶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 고득점자 ▶ 필기시험 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順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 발생 시 전원 합격)

6. 제출서류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자격정보 입력기간 내 자격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오니, 사전에 필요 증빙서류를 구비바라며, 자격정보 또는 증빙서류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원자격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이후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자격정보 입력 시 해당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입사지원시스템에 업로드 하며, 화질이 낮거나 응시자 귀책사유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 3개월 전('21.3.23)이후 발급 건만 인정함. 단, 자격증, 경력증명서는 발급일자 무관
-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최종 합격(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초과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증명서는 대표 직인이 날인되고, 근무기간 직위(직급), 소속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되며, 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명기
- 우대가점 희망자는 자격정보 입력 기간 내에 우대가점 증빙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오기 또는 누락으로 발급기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구 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기술직군	- 모집분야별 인정 필수자격증	자격정보입력기간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 졸업/재학증명, 고교 졸업/재학증명 등)	
고졸인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첨부7 참조)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 -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첨부7 참조)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 - 대학재학증명서 (대학 휴학·재학 중일 경우) - 제적증명서 (대학 중퇴일 경우)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출처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명기된 경우만 인정	
장애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경력단절여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법인 경력증명서 · 법인 직인 날인 및 근무 기간, 직위, 소속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혼인인 경우) - 임신확인서(경력단절 사유가 임신인 경우) - 출산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출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육아인 경우) -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단절 사유가 가족돌봄인 경우) ·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공 통	남 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병적사항 반드시 포함	면접전형 시 원본
	우 대 사 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제출처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명기된 경우만 인정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중증장애인 확인서(중증장애인 가점 시)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 본인이 수급자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부모가 국적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가 국적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2급)	자격정보입력기간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

7. 전형별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입 사 지 원 서 접 수	'21. 06. 30 (수) ~ 07. 07 (수)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21. 07. 12 (월)
자 격 정 보 입 력	'21. 07. 12 (월) ~ 07. 14 (수)
필 기 전 형	'21. 07. 17 (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1. 07. 20 (화)
온 라 인 인 성 검 사	'21. 07. 21 (수) ~ 07. 27 (화)
면 접 전 형	'21. 08. 02 (월) ~ 08. 13 (금)
최 종 합 격 자 발 표	'21. 08. 20 (금)
입 용	'21. 09. 01 (수)

※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8.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자 격 요 건	우 대 가 점
보 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장 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7%)
기초생활수급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본인	전형별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 국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필기전형 만점의 0.5%

※ 가점 적용 시 관련법을 준용하며,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높은 가점 순으로 1개만 인정. 단, 한국사 가점은 타 우대가점과 중복 적용 가능

9. 기타사항

- 우리공사는 채용 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블라인드 원칙을 준수합니다.
-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합격자 본인이 청구 시 가능합니다. (양식 및 절차 별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임용식 무단 불참 후 임용식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힌 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 할 경우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사포기 처리됩니다.
- 신체검사·신원조회·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의 위·변조, 시험 간 부정행위, 부당한 청탁, 압력 등 비위로 합격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우리공사 채용 응시제한(5년간) 및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지며, 입사 이후 적발 시 징계하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됩니다.
-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역, 가족, 출신학교 등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으며, 자가격리 여부 조사 및 자격검증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채용예정인원이 5인 이상인 기계, 전기, 토목 직렬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목표인원에 미달 시 필기전형은 합격선의 -2점 이상, 면접전형은 과락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합격목표인원은 전형별 합격예정 인원의 30%이며, 채용예정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초과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포기, 신원조회·신체검사 부적격, 채용비위 발생 등에 의한 추가합격자 선정 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제 운영)** 우리공사는 전형단계별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전형단계에서의 응시자 본인 점수에 대한 오류 사항 확인 및 점수 재산출에 한하며, 접수기간은 합격자 발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 **(예비합격제)** 우리공사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만큼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입사포기, 신원조회·신체검사 부적격, 채용비위 발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사포기에 의한 예비합격은 임용일로부터 14일까지만 적용합니다. 단,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된 경우 당초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한 인원만큼 추가합격을 시행합니다.
- **(피해자 구제)** 채용비위 또는 사무착오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다음 채용단계에 채용시 기회를 부여(단, 최종단계 피해자는 최종합격 절차를 거쳐 구제)하고, 피해자 특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시험을 시행합니다. 또한, 채용 종료 후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가장 빠른 동일 전형 채용에 피해 발생 단계의 다음 단계부터 채용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전형별 응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요청할 수 있도록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장 배정)** 필기시험장소는 서울, 대구, 광주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입사지원 시 희망지역을 신청받습니다. 단, 정원 초과 시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순으로 배정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전형별 응시대상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추가 안내합니다. (첨부8 참조)

※ 채용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부(☎ 031-780-4568)
- 시스템 장애 문의 (☎ 02-2286-3928)

첨 부 : 1) 직무기술서 1부.

2)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1부.

3) 모집분야별 인정 필수자격증 1부.

4)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 (임용결격사유) 1부.

5) 직무수행능력평가 세부 출제범위 1부.

6) 직무수행능력평가 샘플문항 1부.

7)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제출양식) 1부.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1부. 끝.

첨부 2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 (예) 건국대(글로벌),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경주), 연세대(미래), 한양대(ERICA)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첨부 3 모집분야별 인정 필수자격증

□ 일반· 사회형평전형 (6급(을))

분야	인정 필수자격증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계	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 기계안전 산업기계설비, 소방, 용접 품질관리	가스, 금속재료,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위험물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설계, 소방설비(기계), 승강기, 에너지관리, 용접 일반기계, 품질경영
전기 ·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산업계측제어, 소방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에너지관리,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무선설비, 소방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전기, 전기철도, 전자계산기 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보안 정보통신, 철도신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토목 · 건축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사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교통, 농어업토목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용접,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용접, 위험물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설비, 교통 도시계획, 실내건축 에너지관리, 용접, 응용지질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화공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관리, 위험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에너지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기술사 지도사 모두 지원가능)		건설안전, 산업안전
고객 기술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 고졸인재 (7급)

분야	인정 필수자격증 종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가스 금속재료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위험물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설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승강기, 에너지관리 용접, 일반기계 품질경영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배관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 승강기, 에너지관리 용접, 위험물 품질경영	가스,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시험 기계가공조립 배관, 승강기 에너지관리, 용접 위험물,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전기 · 전자	에너지관리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무선설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전기, 전기철도 전자계산기, 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보안, 정보통신 철도신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SSP)	무선설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위험물 전기공사, 전기 전기철도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전파전자통신 정보보안, 정보통신 철도신호	무선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위험물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파전자통신 철도전기신호, 통신기기

첨부 4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 (임용결격사유)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첨부 5 직무수행능력평가 세부 출제범위

구분		모집분야	출제 범위
6급	사무	상경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경제학원론, 재정학, 경제정책,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등
		전산	전산학개론,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 운영체제, 전산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	기계	기계역학(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재료, 기계공학법, 기계요소 및 설계, 열전달 등
		전기	전자기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전자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디지털논리설계, 통신시스템 등
		토목	토목시공학, 토질 및 기초, 철근 및 P.S.콘크리트공학, 응용역학, 측량학 등
		화공	화공양론, 단위조작, 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폐수처리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등
		안전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안전기술, 전기·기계·화공 안전관리론 등
		고객기술	냉동공학, 공기조화설비, 전기제어공학, 건축설비관계법규, 배관일반 등
고졸 인재 (7급)	사무	사무	회계원리
	기술	기계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기계재료, 기계요소, 기계제작, 측정, 안전관리(소화), 기계제도 등
		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등
		전자	전기전자공학, 디지털공학, 통신기기일반 등

첨부 6 직무수행능력평가 샘플문항

< 공사 고유 직무내용을 반영한 평가문항 샘플 >

※ 본 문항은 응시자의 필기전형 준비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필기전형 문항은 출제 당시의 여건에 따라 문제유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 · 기술공통]

0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와 <보기>를 참고했을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에너지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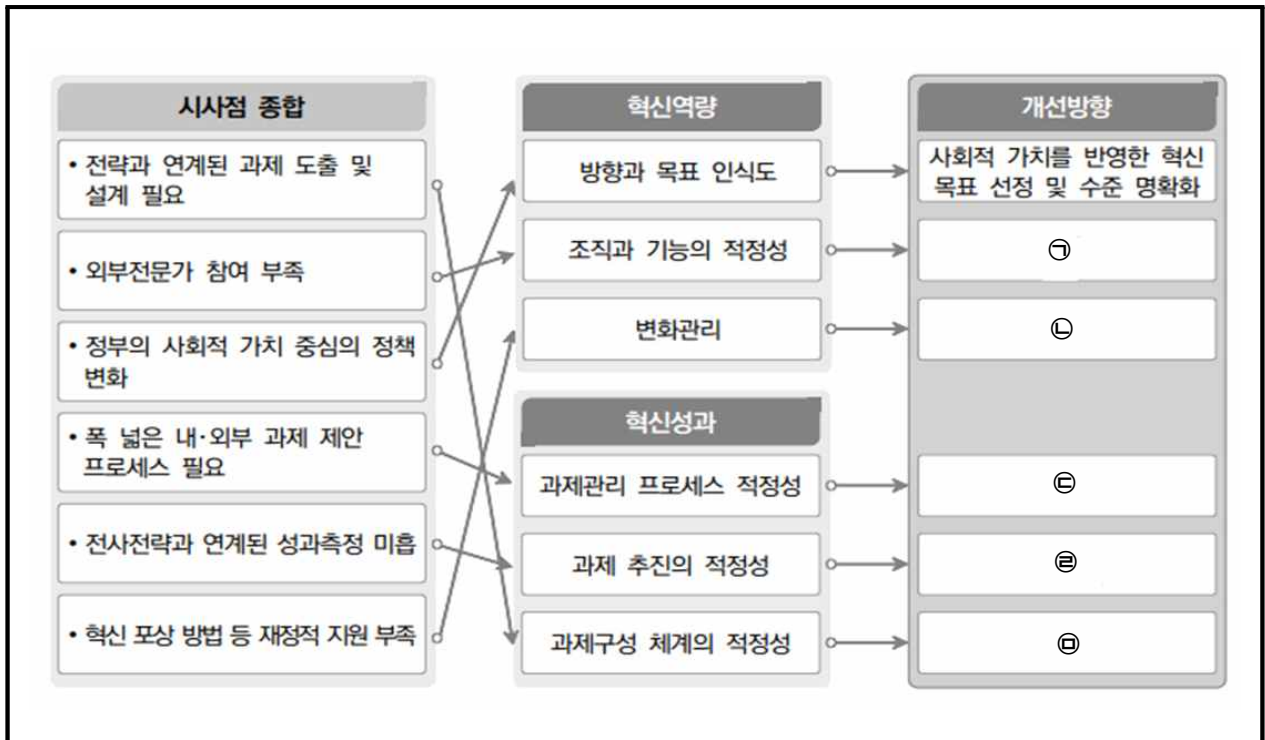
정부는 2017년 11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며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이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에 분산전원 역할을 추가한 것이다.

법령에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너지 절약 ▶국민생활 편익증진 ▶분산형전원이라고 아예 4개나 명시한 후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신재생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를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만큼 집단에너지가 국가 전체에 편익을 준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법조문에 새겨 넣은 것이다.

- ① 기후변화협약 대응
- ② 에너지 절약
- ③ 국민생활 편익증진
- ④ 분산형전원
- 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무직]

04.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 분석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진단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설정한 '혁신계획 개선 방향'의 일부분이다. 빈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② ㉡ 혁신성과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③ ㉢ 외부제안 제한
- ④ ㉣ 전략과 연계된 성과측정
- ⑤ ㉤ 전략과 연계한 혁신과제 발굴

[기술직]

07.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E 작업 중 비용구배가 최소인 작업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K부서는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첨두부하보일러를 ○○시에 건설하고자 한다. K부서는 <자료 2>와 같이 공사 일정을 정상 계획과 급속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표를 정리하였다. 급속 계획은 공사 계획을 최대한 단축했을 때의 일정이며, <자료 1>의 지침에 따라 정상 계획으로 진행했을 때의 비용에서 7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가능한 공사 기한을 단축하고자 한다.

<자료 1> 공사 기한 단축 지침

- 비용구배가 최소인 작업부터 단축한다.
- 비용구배(Cost Slope): 공사 기한(이하 공기)을 1일 단축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

$$\text{* 비용구배} = (\text{급속 비용} - \text{정상 비용}) \div (\text{정상 공기} - \text{급속 공기})$$

<자료 2> 작업 계획표

작업명	정상 계획		급속 계획	
	공기(단위: 일)	비용(단위: 만 원)	공기(단위: 일)	비용(단위: 만 원)
A	5	1,000	3	1,500
B	15	3,000	10	4,000
C	10	5,000	5	8,000
D	7	3,500	3	6,000
E	4	1,000	2	1,300

* 각 작업은 공기 1일을 단축하는데 동일한 비용이 소요된다.

- ① B → A → E → C → D
- ② B → E → A → D → C
- ③ E → A → B → C → D
- ④ E → B → A → C → D
- ⑤ E → B → A → D → C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2021년 신입직원 채용에 입사지원을 함에 있어서 금번 채용의 지원 자격요건이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위 조건에 맞게 입사지원 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만일 향후 입사지원서 상 학력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 질 경우에는 합격한 후에라도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합격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 부 : 1) (고교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고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한국장학재단) 1부
(필요시) 대학증명서(재학·휴학·중퇴 등) 1부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를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체

20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수	험 번 호	

(※ 반드시 입사지원자 본인의 성명 기재 및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선생님 등)의 성명 기재 및 서명 시 탈락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채용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시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게 된 손실 및 피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증상자 : 발열(37.5℃)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 시험 중 감염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 할 경우, 시험본부 또는 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불응 할 경우 퇴실 조치 됩니다.

단, 신분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시험실 입장 시, 화장실 이용 후 반드시 시험장에 비치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세정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시 발열체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 및 진행요원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내 사항 및 감독관/진행요원의 방역관리 안내에 불응할 경우 응시기회 박탈 및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